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1. 3. 16.>

(4쪽 중 제1쪽)

사업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⑩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⑪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⑫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⑭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⑮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⑯ 상가입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⑰ 소 계		180		
⑲ 합 계(⑩ + ⑯)		110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⑯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⑲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⑳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㉑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㉒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㉓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㉖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㉗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㉙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㉚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㉛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㉜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㉝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㉟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㉟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㉟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㉟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㉟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3·5호	13R		
㉟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㉟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㉟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㉟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2항	13V		
㉟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별상액	⑦ 공제세 액
㉙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㉚ 간주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 제4항 · 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⑩, ⑪)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나. ⑪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⑫ 법 인세란 합계액 중 ()안의 금액을 ⑪ 세액란에 적습니다.
 - 다. ⑪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라. ⑪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마. ⑪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바.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사. ⑪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아. ⑪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⑪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⑬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사업연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에 V표 합니다.)

[] 예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 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 제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⑩ 매출원가 계상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⑫ 제조원가에 계상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⑭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합계(⑩+⑪+⑫+⑬+⑭)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⑯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개정 2021. 3. 16.>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 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 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 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㉖)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㉓)	㉗ 이월배제액 (㉙)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 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①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 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times \frac{500}{1,000}) = 200$	$120 \times \frac{200}{400} = 6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times \frac{300}{1,000}) = 120$	$120 \times \frac{120}{400} = 36$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⑯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⑯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⑯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⑯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3. ⑯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⑯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⑯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⑯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사업 연도	· · ·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단위 : 원)

① 연 번	소득발생처			⑤ 소득 구분 코드	⑥국외원천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국가명	③ 코드	④상호(성명)			⑦직접	⑧간주	⑨간접	⑩하이브리드 (Hybrid)
1					세목				
					세액				
2					세목				
					세액				
3					세목				
					세액				
4					세목				
					세액				
5					세목				
					세액				
6					세목				
					세액				
7					세목				
					세액				
8					세목				
					세액				
9					세목				
					세액				
10					세목				
					세액				
11					세목				
					세액				
12					세목				
					세액				
13					세목				
					세액				
14					세목				
					세액				
15					세목				
					세액				
합계					세액				

작 성 방 법

1. ② 국가명단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코드	INT	DIV	RRI	RSI	BSI
종류	인적용역	부동산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그 밖의 소득
코드	PSI	CGR	RYT	CGS	ETC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구분 (약자)	관련근거
⑦ 직접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⑧ 간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⑨ 간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⑩ 하이브리드 (Hybrid)	「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⑦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사업 연도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간접 소유명세**가. 외국자회사**

① 외국자회사 법인명	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③ 국가코드	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⑤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나. 외국손회사

⑥ 외국손회사 법인명	⑦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⑧ 국가코드	⑨ 외국자회사 법인명	⑩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⑪ 내국법인의 주식간접소유비율 [⑤×⑩]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⑫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⑯ 수입배당금액	⑰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⑭ + ⑮×50%) × ⑯ / (⑬ - ⑭ - ⑮×50%)]
	⑬ 소득금액	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	⑮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⑬+⑭]		
합계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원)

⑯ 외국자회사 법인명	⑰ 외국손회사 법인명	⑱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⑲ 국가코드	㉑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㉑ 외국손회사 소재지 국에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원)

㉒ 외국자회사 법인명	㉓ 제3국 지점 등의 명칭	㉔ 소재지국	㉕ 국가코드	㉖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㉗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작 성 방 법

1. ②, ⑦란은 외국자회사 등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적습니다.
4. ⑬ 소득금액, 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란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⑯ 수입배당금액란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⑰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과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아래 세액을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수입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6. ⑳ 외국법인소재지국란은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㉑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㉒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8. ㉓ 외국법인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9. ㉔ 소재지국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㉕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㉖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습니다.
 11. ㉗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앞 쪽)

사업 연도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①외국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⑤현지납세자번호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3. 해당법인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단위:원)

작성방법

-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②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 코드를 적습니다.
 - 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⑤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⑦, ⑭란은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⑨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 ⑩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 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⑯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 \text{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법인의 해당} \\ \text{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내국법인이 부담한} \\ \text{외국법인의 해당} \\ \text{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 \text{법인세액}$$

10. ⑯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⑰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전습니다.